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차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39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차지호 · 박희승 · 윤건영
김영진 · 임호선 · 안호영
황명선 · 김현정 · 김영호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위조물’은 한 번 유포되면 복제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함.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삭제 여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플랫폼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가 미비하여 확산되는 복제본에 대응하기 역부족임. 또한 국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한계와 성인 대상 딥페이크 처벌의 사각지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삭제 의무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형사 처벌 규정을 정교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딥페이크, 디지털 위조물 등 용어를 정의하고, 국외에서 수행된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성인 피해자의 요청 시 48시간 이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및 6조).
- 다. 미성년 대상 성적 합성물에 대해 비동의 추정 원칙을 도입하여 삭제 요건을 완화함(안 제6조).
- 라. 해시값 및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동일·유사한 복제본을 일괄 차단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강제하고, 의무 위반시 연대책임을 부여함(안 제8조).
- 바. 플랫폼의 적극적 삭제를 유도하기 위한 면책 규정과 함께, 정보통신자의 방어권을 위한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 사. 의무 불이행 시 국내 매출액의 1% 이내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0조).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유포되는 딥페이크 조작콘텐츠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삭제·차단·확산방지 의무 및 피해자의 신고·구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딥페이크 피해의 예방과 회복을 실효적으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딥페이크”란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조작하거나 합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작된 영상·음성·이미지 및 이에 준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란 사람의 성적 부위, 성적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상황을 주된 내용으로 표현한 그림, 사진, 영상, 만화, 아바타·가상인물 및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한 표현물을 말한다.
3. “디지털 위조물”이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기타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에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상황과 다르게 조작·합성된 성적 이미지 표현물로서, 특정 개인이 식별 가능하게 나

타나는 것을 말한다.

4.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이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전송·공개된 다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촬영·제작에는 동의하였으나 공개 또는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가. 피해자의 실제 신체를 촬영한 성적 이미지 표현물

나. 피해자의 얼굴·신체·음성을 합성·조작하여 제작한 디지털 위조물

5. “성인 피해자”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의 대상이 된 만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미성년 피해자”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의 대상이 된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7. “플랫폼사업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의 게시·공유·유포를 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요청”이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확산 콘텐츠”란 특정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재게시·반복게시·미러링·편집 또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하여 확산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0. “국내대리인”이란 국외 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유통되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외에서 수행된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수사기관, 법원,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수사·재판·행정절차에서의 제출 및 보관, 공익적 목적의 언론보도·학술연구·교육·의학적 연구 등으로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및 플랫폼사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더 강한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성인 피해자의 삭제요청) ① 성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플랫폼사업자에게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삭제요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의 성명 등 신원 정보

2. 삭제를 요청하는 콘텐츠의 구체적 위치(서비스명, URL, 게시일, 계정명 등)
3. 해당 콘텐츠가 자신을 식별 가능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공개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
4. 허위 신고 시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진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플랫폼사업자는 삭제요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성인 피해자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 ① 플랫폼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사업자는 삭제·차단이 완료된 후 그 사실 및 조치 범위(원본·복제·재게시 등)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자 신원 확인 및 비동의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조(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삭제의 특례) ① 플랫폼사업자는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인지하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삭제요청 여부는 불문한다.

② 불가피한 기술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인

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미성년의 얼굴·신체가 다른 사람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에 합성·조작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미성년 또는 그 보호자·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해당 콘텐츠에 대한 비동의를 명시하여 삭제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성적 이미지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패러디·필터 등으로서, 미성년의 성적 착취 또는 학대와 무관한 경우
2. 수사·재판·교육·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의 이용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⑤ 보호자, 교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익보호기관 등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확산콘텐츠의 삭제 및 기술적 조치) ① 플랫폼사업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확산콘텐츠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시값 비교,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고 절차의 표준화 및 신고센터) ① 플랫폼사업자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 절차를 표준화하여 마련하고, 이용자가 쉽게 인지·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지원하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플랫폼사업자는 피해신고센터의 정당한 협조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의무 및 제5조·제6조에 따른 삭제·차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플랫폼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선의의 조치에 대한 면책) ① 플랫폼사업자가 피해자의 삭제요청 또는 합리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선의로 접근 제한 또는 삭제 조치를 한 경우, 그 콘텐츠가 결과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조

치에 대하여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콘텐츠가 삭제 또는 차단된 정보의 게시자는 해당 콘텐츠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기간 및 플랫폼사업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피해자가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삭제요청을 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벌칙 및 과징금) ① 플랫폼사업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삭제·차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국내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플랫폼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미성년 피해자에 관한 제6조의 삭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